

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찬성 의견

- 입법발의 : 2016. 9. 23 (의안번호 2450)
- 발의자 :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외 11명
- 주요내용 :
 - 학생수 격감의 농산어촌 소규모 사립학교 해산특례 규정의 적용 기간을 2021. 12. 31까지로 함.
- 찬성의견 제출 : 2016. 10. 10, 국회 교육위, 교육부 학교정책과
- 의견 요지 :
 -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입법조치임.
 - 자율적 폐교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해산특례규정의 미복원으로 그 기회를 누리지 못했던 영세사학의 자율해산을 적극 유인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진행상황 :
 - 2017. 9 현재 국회 소관위 계류

※붙임 : 이장우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찬성 의견

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개정안	검 토 의 견	
	의 견	사 유
<p>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 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찬 성</p>	<p>○현재 정부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펴고 있으나,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소규모 공립학교의 통폐합이 지역 주민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비해, 소규모 사립학교는 학생수 급감으로 교사 수급과 학생 유치 등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많고 특정 지역에는 사립학교들이 중첩되어 위치하는 등 소규모화를 부채질하는 요인도 적지 않아,</p> <p>– 지금처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위한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공 보다는 오히려 사립학교의 자율 통폐합을 유인하는 법 개정과 그 법에 의한 인센티브 (해산장려금) 제공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에 더욱 효과적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런 점에서 개정안은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입법조치로 판단됨.</p> <p>○ 현재 전국의 소규모 영세사립학교(학생수 300명 이하)는 343개교(중학교 251개교, 고등학교 92개교)로서 전체 사립 중·고교 1,585개교의 약 2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영세학교는 적정</p>

		<p>규모 학교에 비하여 교육재정이 과다 투입되는 등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전공별 교사 부족으로 인한 과목상치교사 및 순회교사 운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곤란 등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도 문제점이 상당함.</p> <p>- 개정안은 이러한 경영부실 학교법인의 자율 해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산 사유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학교들의 부실한 교육여건에 의한 교육격차 심화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간 자발적 폐교의 필요는 크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2006.12.31. 일몰된 개정안의 특례규정이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그 기회를 갖을 수 없었던 학교법인들의 자율해산을 적극적으로 유인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p> <p>○ 한편, 개정안은 자율 해산 특례를 202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사학의 출현이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것임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특례 규정의 적용시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농산어촌의 영세사학 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의미가 있을 것임.</p>
--	--	-------------------------------------------------------------------------------------------------------------------------------------------------------------------------------------------------------------------------------------------------------------------------------------------------------------------------------------------------------------------------------------------------------------------------------------------------------------------------------------------------------------------------------------------------------------------------------------------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

- 발의일 : 2016. 10. 31 (의안번호 3120호)
- 발의자 : 더민주당 박홍근 의원 외 9명
- 주요내용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 등의 행정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권자 기속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함.
- 반대의견 제출 : 2016. 11. 7, 국회 교육위 및 교육부 학교정책과
- 의견 요지 :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본질적 성격에 반하는 것임.
 - 학생 교육상 학생들과의 격리 필요성이 시급한 교원에 대한 정당한 징계처분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음.
- 진행상황 :
 - 2017. 9 현재 국회 교육위 계류

※붙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p>제10조(소청심사 결정)</p> <p>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u>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u></p>	<p>반대 (현행 유지)</p>	<p>○ 개정안의 후단 신설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않는 것임.</p> <p>- 즉 심사위원회가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 처분권자는 이에 기속되고 그 원징계처분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이면 처분권자는 불복할 수도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이면 그 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그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바,</p> <p>- 법원이 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비로소 학교법인을 기속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행정청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무조건적인 기속 효력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갖는 행정처분 불복권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불합리함.</p> <p>- 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어디까지나 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해되어야 하며, 바로 그것이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p>

	<p>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측에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3항의 취지일 것임.</p> <p>○ 한편,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을 개정의도로 밝히고 있으나, 사립학교 법인의 징계처분이 교내에서 성 문제나 학생 폭력 문제, 기타 중대한 비위를 일으킨 교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과의 격리 필요성이라는 시급한 사정을 고려해 내려지는 정당한 징계 처분마저 자칫 개정안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어 사립학교가 징계를 통해 학교운영과 학생교육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개정안이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

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

- 입법발의 : 2016. 11. 8 (의안번호 3389호)
- 발의자 : 더민주당 홍영표 의원 외 49명
- 주요내용 :
 - 교원의 범위에 학교에 근무하였던 사람까지 포함.
 - 일반노조법과 동일하게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설립·경영자별로도 교섭할 수 있음.
 - 교원노조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
- 반대의견 제출 : 2016. 11. 15, 국회 환경노동위 및 교육부 학교정책과
- 의견 요지 :
 - 비교원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단체교섭의 의미를 훼손시키고 비교원의 '비교육적인' 의사를 교섭 과정에 개입시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하고 교섭의 혼란을 가중시킴.
 - 일반노조법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노조전임자의 급여 수령 금지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이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음.
 - 조직형태 상 일종의 산별노조인 교원노조의 힘과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사용자 역시 광역 혹은 전국 단위 조직으로 단체교섭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지, 사립학교만 학교 단위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은 공·사립간 형평에 맞지 않으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노조의 공격적 교섭 요구에 교육과 학교 운영만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교원노조의 쟁의행위 허용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정

에 어긋나고 학교현장에 주는 혼란과 충격으로 국민 여론의 큰 우려와 반발을 살 수 있음.

□ 진행상황 :

○ 2017. 9 현재 국회 교육위 계류

※붙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

개정안	의 견	사 유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p> <p>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p> <p>② 이 법에서 “교원의 노동조합”이란 교원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p>	반 대	<p>○ 교원의 노동조합이란 교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단체교섭하는 단체이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해서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법령이나 조례와는 전혀 무관한 ‘교원 아닌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단체교섭권 등 각종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은 단체교섭의 의미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교원 아닌 자’의 ‘비교육적인’ 의사가 그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하고 교섭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현직교원에게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현행 규정은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단체교섭의 순수성과 안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임.</p> <p>-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역시 ‘교원 아닌 자’를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을 유념해야 함(2013헌마671).</p> <p>○ 개정안 제2조의 1항은 결국 한번</p>

<p><u>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한다.</u></p>		<p>교원이었던 자는 계속적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특히 교사 자격만 있었으면 근무 형태와도 상관없다는 논리 위에 서 있는 것이나, 이는 교원의 노동조합으로서 지녀야 할 본질을 몰각하고 일반 국민의 법 상식이나 감정과도 동떨어진 조항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음.</p> <p>- 개정안 제2조의 2항 역시 교원의 노동조합을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과 달리 규정해도 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즉 일반 노조법과 다른 특례들을 교묘히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되나, 교원의 노동조합이 보다 더 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과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노동조합을 교원이 주체가 되는 단체가 아니라 전적으로 교원으로 구성되는 단체로 인식하는 것이 긴요함.</p>
<p>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u>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u></p>	<p>반 대</p>	<p>○ 개정안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 특정 교원을 노조전임자로 정하는 문제는,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와는 달리 교원의 정원과 현원이 법령 및 예산에 의해 엄격히 규제받고 있고 무엇보다 학생 교육과 지도라는 교사로서의 공공적, 공익적 의무에서 해제하는 일과 직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p>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교육여건개선 활동 등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때, 임용권자가 직접 전임자 발령이라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업무의 전환을 허가토록 하는 것이 옳바르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정한 것을 보충적으로 동의해 준다거나 아예 단체협약이 정한 바를 무조건 따르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개정안 제5조제5항은 그 개정의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과 동일하게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발상임. 즉, 201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을 신설한 취지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노조전임자의 급여 수령을 일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어온 산업 현장에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해 온 오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단지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미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토록 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그 입법취지가 전혀 다른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할 이유는 하등 없다고 하겠음.

<p>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u>이 경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별로 교섭하거나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할 수 있다.</u></p> <p>제8조(쟁의행위) 노동</p>	<p>반 대</p>	<p>- 더욱이 노조전임자는 교단을 떠나 조합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일만 하게 되는데, 학생 교육을 위해 일 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 인식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p> <p>○ 이 법 제4조에 의하면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개별학교를 상대로 단체교섭 등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없음(노동부 노조 01254-592('99.8.5)).</p> <p>○ 또한, 조직형태 상 일종의 산별노조인 교원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과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역시 광역 혹은 전국 단위 조직으로 단체교섭에 나서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사립학교만 개별 설립·경영자와도 교섭하도록 하는 것은 공·사립간 형평에 맞지 않으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 크나큰 심리적 부담을 주고 노조의 공격적 교섭 요구에 교육과 학교 운영만 어렵게 만들 뿐 정작 교섭의 실익을 기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임.</p> <p>○ 개정안 제8조는 현행과는 달리 교</p>
-------------------------------------------------------------------------------------------------------------------------------------------------------------------------------------------------------------------------------------------	-------------------	-----------------------------------------------------------------------------------------------------------------------------------------------------------------------------------------------------------------------------------------------------------------------------------------------------------------------------------------------------------------------------------------------------------------------------------------------------------------------------------------------------------------------------------------------------------------------------------------------------

<p>조합의 쟁의행위에서 교원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으로 본다.</p>	<p><u>반 대</u></p>	<p>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사실상 허용하자는 것으로 교원의 복무에 관한 여타 법령 규정과도 맞지 않고 국민 여론의 큰 우려와 반발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함.</p> <p>- 그동안 우리 국민의 눈에 비친 교원 노동운동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음.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수시로 불법의 집단행동을 하는 등 교단 이미지 실추, 학부모 불안, 학생들의 학습권 침탈 등의 교육적 손실을 초래해 온 것이 사실인데, 개정안처럼 아예 파업이나 태업, 준법투쟁, 피켓팅 등을 허용하게 된다면 학교현장에서는 온갖 사유의 집단행동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정당화될 수 없는 사유의 투쟁적 행동마저 출몰할 수 있어 이때의 혼란상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주는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임.</p> <p>○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파업이라도 대체인력을 쓸 수 있게 예외를 두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의 파업 시에는 사용자가 짧은 시간 내에 적격의 교원들을 대체 선발하기란 그 필요 절차나 요건 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돼야 함.</p> <p>○ 개정안 제8조는 공무원의 쟁의행위</p>
-----------------------------------------------------------------------	-------------------	---------------------------------------------------------------------------------------------------------------------------------------------------------------------------------------------------------------------------------------------------------------------------------------------------------------------------------------------------------------------------------------------------------------------------------------------------------------------------------------------------------------------------------------------------------------------------------------------------------------------------

		<p>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제1항과,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의 규정과도 어긋나는 것임.</p>
--	--	-------------------------------------------------------------------------------------------------------------------

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

- 입법발의 : 2017. 2. 1(수) (의안번호 5357)
-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외 10명
- 주요내용 :
 - 학생 대표가 학교생활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함.
- 반대의견 전달 : 2017. 3. 6(월), 국회 교육위·교육부 학교정책과
- 의견 요지 :
 - 심의(자문)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는 학생대표의 학운위 회의 참석 허용은 심의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저해시켜 학운위의 견제 기능 약화를 불러 올 수 있음.
 - 관련법령과 조례에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 차원에서 이미 학칙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 등을 두고 있어 법률 개정의 실익이 없음.
- 진행상황 :
 - 2017. 9 현재 국회 교육위 소위 회부.

※붙임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개정안	검 토 의 견	
	의 견	사 유
<p>제34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반 대</p>	<p>○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대부분은 학교 경영 및 행정,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사항인데, 학생들에게는 이런 사항들의 심의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없어 학생 대표의 회의 참석 허용은 오히려 심의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저해시켜 학교운영위원회의 견제기능 약화를 불러올 수 있음.</p> <p>- 더욱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된 심의 대상인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직원 조차 아직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생 대표의 회의 참석 허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심의 과정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부작용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p> <p>○ 한편, 학생들의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선, 현재에도 시·도 조례에 따라 공립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도 하고 있고 학부모</p>

	<p>나 교직원 외에 학생과 지역주민 까지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내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 개정의 실익이 없음.</p> <p>- 무엇보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물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제30조에서는 학교장이 학생자치활동의 권장·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초·중·고들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 차원에서 학칙으로 학교 생활과 직결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처럼 굳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건마다 의견을 수렴해 제안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음.</p>
--	-------------------------------------------------------------------------------------------------------------------------------------------------------------------------------------------------------------------------------------------------------------------------------------------------------------------------------------------------------------------------------------------

마.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반대 의견

- 입법발의 : 2017. 3. 3 (의안번호 5997호)
-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외 31명
- 주요내용 :
 -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교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방과후 교장)을 두되, 학교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임명함.
- 반대의견 제출 : 4. 5, 국회 교육위 및 설훈 의원실
- 의견 요지 :
 - 입법 취지 자체가 이미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각 시·도의 자치법규들 속에 충실히 반영돼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법률 제정의 실익이 없음.
 - 사립학교의 제반 시설물은 「사립학교법」 제5조에서 규정하듯이 학교법인 소유의 자산이라 할 것인데 이를 국가가 법률로 개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입법임.
 - 방과후 교장을 학교법인의 임면권자가 아닌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임명토록 한 것은 위법함.
- 진행상황 :
 - 2017. 9 현재 소관위(교육위) 미상정

※붙임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1. 동 법률안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률안 제정의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런 수준의 입법 취지라면 이미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각 시·도의 자치법규들 속에 충실히 반영돼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법률 제정의 실익이 없음.

- 실제로 이미 대부분의 초·중·고들이 운동장과 체육관은 물론 교실 이용까지 외부에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부모 및 지역민들과 친화감을 키우고 학교의 홍보 효과까지 내는 등, 학교 측으로선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 학교시설의 개방에 학교장이 소극적이라는 동 법률안 제안의 이유는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하겠음.

2. 만약, 일부 지역의 학교장들이 학교 시설의 개방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면 그것은 최근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학생 보호, 안전 대책 차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지, 지역 주민들에게 무작정 폐쇄적인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곤란함. 학교장으로선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못지않게 학생들이 평화롭고 쾌적하며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더욱 큰 책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3. 결국, 학교 시설 개방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학교장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지역적인 특수성은 시·도의 교육규칙에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법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려는 것은 학교 측은 물론 학생·학부모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주민들까

지도 전혀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임.

4. 한편, 동 법률안은 학교시설의 의무 개방 대상에 사립학교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사립학교의 제반 시설물은 「사립학교법」 제5조에서 규정하듯이 학교법인 소유의 자산이라 할 것인데 이를 법률로 개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은 명백히 과잉입법임. 더욱이 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적 권한을 명시한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서까지 개방을 압박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사적 재산권 보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5. 동 법률안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방과후 교장’을 모든 학교에 두도록 하고 있지만, 기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업무’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내릴 결정의 사안이지 학교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외부인사가 선발돼 들어와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설령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더라도 기존 교직원 중에 담당자를 두어 운용하는게 훨씬 업무 효율이 높지, 외부에서 뽑은 인사를 방과후 교장으로 두어서는 학교 개방 문제를 두고 학교장과 공연한 갈등과 마찰만 일으킬 개연성이 크고, 두 교장의 업무 지시 사이에서 교직원들의 혼란만 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6. 사립학교의 방과후 교장을 학교법인의 임면권자가 아닌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임명토록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큼. 비록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 소속의 근로자로 교원과 직원만을 정하고 있어 방과후 교장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직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실질 면에선 방과후 교장 역시 사립학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학교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법인 소속의 근로자임을 고려한다면, 임용의 형식이야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관계없이 임용 자체는 학교법인 이사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임.

7. 상기와 같은 이유들을 고려할 때, 학교 시설의 개방은 현행과 같이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시행되는 것이 합당하며, 동 법률안 은 학교 현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적절치 않은 면들이 상당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

- 입법발의 : 2017. 7. 20 (의안번호 8114호)
-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외 10인
- 주요내용 :
 - 관할청이 교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임용권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함.
- 반대의견 제출 : 7. 31, 국회 교육위 및 전재수 의원실
- 의견 요지 :
 - 교육감의 징계 요구에 임용권자가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립학교 징계위의 독자적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장차 교육감의 징계 요구가 남발될 소지가 커 부당함.
 - 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사인(私人)인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위법함.
- 법안 진행상황 :
 - 2017. 9 현재 소관위(교육위)에 미상정

※붙임 :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p><u>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은 제62조에 따른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u></p>	<p>신분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함.</p> <p>- 무엇보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육감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감의 징계사유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재량이 있는데, 개정안의 제54조 제3항 후단처럼 이 재량권을 무력화시킨다면 교육감의 징계 요구가 남발될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장차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 의결에 있어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어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권한마저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옴.</p> <p>- 또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육감의 징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징계 사건을 교육행정기관 등에 두는 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의한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으로 대용(代用)</p>
---------------------------------------------------------------------------------------------	----------------------------------------------------------------------------------------------------------------------------------------------------------------------------------------------------------------------------------------------------------------------------------------------------------------------------------------------------------------------------------------------------------------------------------------------------------------------------------------------------------------------------------------------------------------------

		<p>하려는 것으로 법 해석·적용의 부당한 확장에 지나지 않는 명백한 과잉입법 시도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학교법인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면권자의 인사권의 행사로서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지만, 국가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내리는 징계는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사인인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징계의결의 독자적 권한을 전면 부정하는 초법적인 시도이고 법 적용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p>
--	--	--------------------------------------------------------------------------------------------------------------------------------------------------------------------------------------------------------------------------------------------------------------------------------------------------------------------------------------

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

- 입법발의 : 2017. 8 2 (의안번호 8362)
-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외 9인
- 주요내용 :
 - 이사장 또는 학교장이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등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반대의견 제출 : 8. 11, 국회 교육위 및 박광온의원실, 교육부 학교정책과
- 의견 요지 :
 - 이사장 또는 학교장 등의 법령 위반에 대해 학교 지원금 중단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지원금이 쓰이는 학생 지도 및 교육을 위축시켜 학생들이 피해를 유발하는 구조가 되어 부당함.
 - 이사장 또는 학교장의 교육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상에 강력한 처벌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정 신설은 과도하고 실익도 없음.
- 법안 진행상황 :
 - 2017. 9 현재 소관위(교육위)에 미상정

※붙임 :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의 견	사 유
<p>第43條(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u></p> <p>1. <u>학교법인의 이사장,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학교의장이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u></p>	<p>반 대</p>	<p>○ 개정안 제3항 제1호처럼 사립학교 이사장 또는 교장의 교육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 그 처벌 수단으로 학교 지원금 중단을 강제하는 것은 처벌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음. 즉 이사장, 교장 등의 법령 위반이면 위반의 당사자에게 처벌의 실질을 기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지, 학교 지원금을 중단하면 지원금이 쓰이는 학생 지도 및 교육이 당연히 위축되어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가 되고 마는 것임.</p> <p>－ 또한 이사장, 학교장의 교육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 폐쇄(제65조)와 같은 강력한 제재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사립학교법 상 이사취임승인취소(제20조의2), 교육청의 해임 요구(제54조의2), 징계(제61조) 등 다양한 처벌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정 신설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음.</p> <p>○ 개정안처럼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규제) 수단의 하나로 지원금 중단을</p>

<p><u>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u></p> <p>2.~3. (생략)</p>	<p>고려하는 것은 사립학교 세입예산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학생 교육의 부실화만 가져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사립학교 지원은 소위 평준화 시책 이후 취해진 사립학교의 수업료 징수권 없음과 그에 의한 재정 결손을 원래대로 보전하고, 납세자인 공·사립학교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권을 균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점을 널리 살펴야 함.</p>
-----------------------------------------------------------------------	-------------------------------------------------------------------------------------------------------------------------------------------------------------------------------------------------------------

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

- 입법발의 : 2017. 8 17 (의안번호 8568)
-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외 10인
- 주요내용 :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관할청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둠.
- 반대의견 제출 : 8. 30, 국회 교육위 및 오영훈 의원실
- 의견 요지 :
 - 관할청이 합리적, 전문적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임시이사 파견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현행의 규정을 ‘개악’하는 것이고,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권 확대 의도를 드러낸 것이어서 부당함.
 -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한다면 이는 학내 구성원의 상충하는 이익을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큼.
- 법안 진행상황 :
 - 2017. 9 현재 소관위(교육위)에 미상정

※붙임 :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 개정안 내용

가.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던 것을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관할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를 둠(제24조의2 제1항)

나. 관할청은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고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제24조의2 제4항)고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함

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제24조의 3, 4)하던 것을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및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24조의2 제4항)

라.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함(제25조, 제25조의2).

마.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정상화과정에서 임시이사 해임 후 이사를 선임하는 데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25조의3).

□ 의 견

○ 위의 개정안 내용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격하시키고 관할청이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정상화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이나 문제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서 학교법인의 자율성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에서 제안된 것임.

○ 현행법에 의하면 조정위원회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면 15년 이상의 법률, 교육, 회계, 교육행정 등의 경력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학교법인을 둘러싼 각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에 의하여 내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처럼 관할청이 이런 조정위원들의 ‘민주적인’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현행의 규정을 ‘개악’하자는 것으로 학교법인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아님. 만약 개정안 내용이 현실이 될 경우, 관할청에 의한 임시이사 파견이 남용돼 학교 경영에서 각종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정상화 법인의 정이사가 관할청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채워져 학교법인의 설립 이념까지 형해화되고 마는 결과가 초래될 것임.

○ 또한 개정안 제25조의 3은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를 선임하는 데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는 자칫 학내 구성원의 상충하는 이익을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것 같이 이해될 수 있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굳이 이런 규정 신설이 아니더라도 조정위원회가 이미 정이사 선임을 위한 심의 중 제 구성원 간 단절된 신뢰의 고리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설립자 또는 종전이사, 학내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하겠음.

○ 종합하면,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는 법에서 정한 조정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신중하고 공정한 심의 절차 등으로 이루어 심의 사안을 가장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결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서도 조정위원회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

제3항), 그렇다면 관할청 역시 그 결과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해야 마땅한 것이지 개정안처럼 위상을 격하시켜 자문 결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임.

자.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 반대 의견

- 입법발의 : 2017. 8 18 (의안번호 1782)
-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도의원 외 43인
- 주요내용 :
 - 학교내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교직원 회의와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반대의견 제출 : 8. 20, 경기도의회 의장 및 교육위원장
 - ※ 본회는 8. 21 아래의 반대의견서를 경기도지회로 송부하여 관내 다수 회원교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토록 협조 요청.
- 의견 요지 :
 - 학생회는 현행 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미 법제화 되어 있으며, 각 급학교의 학교규칙에 의해서도 그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상세히 갖추어져 있어 굳이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려는 것은 학교 단위의 자율과 자치를 저해하는 일이 됨.
 - 교사회와 직원회 등 오랫동안 임의적 친목단체로서, 즉 법인격 없는 사조합으로 존재해 온 곳에 공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일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함.
 - 교직원회의는 현행 법률상 설치 근거도 없으며,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능과 학교장의 학교운영 통할권을 무력화시키고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회의 경영권한마저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수용 불가함.
- 조례안 진행상황 :
 - 2017. 9 현재 도의회 소관위(교육위)에 미상정

「경기도 학교 자치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조례안	검 토 의 견	
	의 견	의견제출 사유
<p>제4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p> <p>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6.(생략)</p> <p>③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p> <p>④ 학생회는 그 결정 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p> <p>⑤ 학생회 지도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반 대</p>	<p>○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자치활동’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이미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권장·보호에 대한 명문 규정과 함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도 학교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제8호에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0조 역시 학교의 장에게 이러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것을 이미 의무화하고 있음.</p> <p>－ 이처럼 학생회는 현행 법령을 근거로 하여 사실상 법제화 되어 있으며, 각급 학교의 학교규칙에 의해 그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상세히 갖추어져 있음. 이처럼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학생회를 굳이 법령도 아닌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학교 단위의 자율과 자치를 저해하는 일임.</p> <p>○ 「조례안」은 학생회가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은 물론 학교장에 대한 건의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학생들이 학교 경영사항에까지</p>

	<p>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나, 이런 식의 의견 제시는 참된 의미에서의 학생자치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임. 현행법령이 학생자치활동 차원에서 학생회를 조직·운영하도록 함은 건전한 시민교육 차원에서 민주주의 생활방식을 배우고 경험하는 한편 학교장과 교사들이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참조하기 위함이지, 학교 등에 제출할 학생 전체의 의견을 심의 결정토록 하거나 학생회의 집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학생회의 활동이 학생회가 자신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이를 받아들이도록 학교에 요구하는 등의 활동이 되어서는 곤란함.</p> <p>○ 그런 점에서, 「조례안」의 학생회 심의 기능은 자칫 학생회를 학생들의 권익 대변 기구로 간주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학교장 등의 학교 운영 과정에 큰 부담을 지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학생자치활동으로서의 학생회는 어디까지나 교육적 배려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임.</p> <p>○ 한편, 초·중등학교의 재학생들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아직 성인으로서의 성숙한 판단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자칫 일부 교원들의 왜곡된 주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쫓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p>
--	--------------------------------------------------------------------------------------------------------------------------------------------------------------------------------------------------------------------------------------------------------------------------------------------------------------------------------------------------------------------------------------------------------------------------------------------------------------------------------------------------------------------------------------------------------------------------------------------------------------------------------------------------------------

<p>수 있다.</p> <p>②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6. (생략)</p> <p>③ 직원회의 임원은 직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p> <p>④ 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p>		<p>들 단체가 조직화되고 나면, 친목 도모와 공동이익의 실현이라는 본래부터 지녔던 지향점은 상실한 채 조직 장악을 위한 집단 내 세력 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그 과정에서 일부 세력이 학교장 등 학교운영 주체를 향하여 대립각을 세우고 무차별적인 공격과 비난으로 학교사회를 갈등의 장으로 몰고 갈 소지가 있으며 이는 교직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p> <p>- 교사회와 직원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내부의 분열이 가속화될 경우, 이는 직·간접으로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교사와 직원은 물론 학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불러오고 학교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게 됨. 결국, 자치기구의 등장으로 인해 학교자치가 위기를 맞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임.</p> <p>○ 현재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안에 따라 위원들이 속한 집단의 입장에 따른 의견 충돌과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조례안」 처럼 학생회, 교사회, 직원회 등에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자치기구 간 의견 차이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그대로 반영돼 학교운영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과당적 대립에 휘말려들게 될 수 있음.</p>
--------------------------------------------------------------------------------------------------------------------------------------------------------	--	------------------------------------------------------------------------------------------------------------------------------------------------------------------------------------------------------------------------------------------------------------------------------------------------------------------------------------------------------------------------------------------------------------------------------------------------------------------------------------------------------------------------------------------------------------------------------------------------------------------------------------------------------

<p>제8조(교직원회의)</p> <p>① 학교에는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의를 둔다.</p> <p>② 학교의 장은 학교내 교직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p> <p>③ 교장은 교직원회의의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서기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p> <p>④ 교직원회의의 토론과 의결은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p> <p>⑤ 교직원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이를 존중</p>	<p>반 대</p>	<p>만약,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장이 특정 자치기구의 의견을 고려한 결정을 내릴 경우 이는 다른 자치기구들의 투쟁 명분으로 활용돼 전혀 예기치 못할 학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p> <p>○현행 법령상 교직원회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 교직원전체회의라는 개념이 언급될 뿐 법률상 근거가 없음.</p> <p>○ 「조례안」에서 규정된 교직원회의는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기능과 학교장의 학교운영 통할권을 무력화시키고,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회의 경영권한마저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로 작동할 개연성이 커 전혀 수용할 수 없음.</p> <p>- 특히 이런 성격의 기구를 사립학교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음.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사학의 자유는 설립의 자유는 물론 운영의 자유 또한 그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와 관계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없음. 그러나 교직원회의의 설치 및 교무·학사·재정·교육과정·인사에 관한 심의 기능 부여는 학교운영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사실상 이 단체에 넘겨주는 효</p>
-----------------------------------------------------------------------------------------------------------------------------------------------------------------------------------------------------------------------------------------------------------------------------------------------	-------------------	---------------------------------------------------------------------------------------------------------------------------------------------------------------------------------------------------------------------------------------------------------------------------------------------------------------------------------------------------------------------------------------------------------------------------------------------------------------------------------------------------------------------------------------------------------------------------------------------------------------------------------------------------

<p>하도록 노력한다.</p> <p>⑥ 교직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6. (생략)</p> <p>⑦ 교직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에 정한다.</p>	<p>과를 낳아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음.</p> <p>○ 특히 교직원회의의 구성은 단위학교의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운영을 크게 저해할 개연성이 높아 받아들일 수 없음. 어느 조직마다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을 경우, 조직 차원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기존 질서에 강력한 도전을 행하는 것이 상례라고 볼 때, 교직원회의 역시 기존 학교운영의 관행과 원칙에 대해 대안없는 비판과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설 개연성이 높아 학교장의 건전한 지도력 발휘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p>
----------------------------------------------------------------------------------------------------------------------------	---------------------------------------------------------------------------------------------------------------------------------------------------------------------------------------------------------------------------------------------------------------------------------------------------------